

문서번호	농식품유통과-410	주무관	농산물유통 팀장	농식품유통 과장	농업환경국 장		
결재일자	2026. 1. 14.				전결 2026. 1. 14.		
공개여부	대국민 공개	강민지	김도형	이남길	공영식		
		협조	예산팀장 이은정				

농산물 유통 역량강화사업 지원계획(명시이월)

결재요지

- 사업기간 : 2026. 1. ~ 12.
- 사업비 : 333,000천원(도비 49,950 시비 116,550 자담 166,500)
- 사업대상 : 당진시 원예산업발전계획 시행주체 또는 참여조직 중
우리시 주요품목을 수탁, 매취하는 조직
- 사업내용 : 농산물 수매 및 유통 역량 확보를 위한 자재 구입비 지원
※ 2025년 5회 추경 반영사업



농업환경국
(농식품유통과)

농산물 유통 역량강화사업 지원계획(명시이월)

우수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맞춤형 역량강화 지원을 통한 산지유통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 기여

I 추진방향

- 관내 농산물의 규격화, 조직화 도모를 위한 농산물 계약재배 및 수매시 필요한 각종 유통자재 구입 지원

II 사업개요

- 사업명 : 농산물 유통 역량강화 지원
- 사업기간 : 2026. 1. ~ 12.
- 사업비 : 333,000천원(도비 49,950 시비 116,550 자담 166,500)
- 지원대상 : 당진시 원예산업발전계획 시행주체 또는 참여조직 중 우리시 주요품목을 수탁, 매취하는 조직
- 지원내용 : 농산물 수매 및 유통 역량 확보를 위한 자재 구입비 지원
 ※ 수매용 콘티박스, 파렛트, 출하용 농산물 포장재 등 유통에 직접 소요되는 자재 지원
- 예산과목 : 농식품유통과-선진유통체계구축-농산물유통구조개선-농산물 유통역량강화지원-민간자본이전-민간자본사업보조

III 사업시행계획

- 사업시행 : 당진시장
- 사업시행절차

① **대상자 공모** ■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대상자 공모 신청·선정

② **지원계획 알림** ■ 보조금 교부계획(보조내시) 통보

③ **보조금 교부신청** ■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에 제출

④ **보조금 교부결정** ■ 보조결정 통보 후 사업 시행
 ■ 시(농식품유통과) → 사업대상자

⑤ **보조금 청구** ■ 사업 완료 후 서류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
 ■ 사업대상자 → 시(농식품유통과)

⑥ **보조금 지급** ■ 정산서류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
 ■ 시(농식품유통과) → 사업대상자

- 사업시행요령

- 추진 중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**市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**(세부사업내역이 총사업비 기준 30%이상 변경의 경우 **道** 사업계획 변경승인, 30%미만 **市** 사업계획 변경승인)
- 사업비는 **사업계획과 사업목적에 부합되게** 사용되어야 하며,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(종합물가정보,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)를 활용하여 산출

○ 사업비 집행 및 정산

- 자부담금 우선 집행을 원칙으로 함.
- * 금융기관 거래자료로 통장 거래내역 제출(무통장입금표는 불인정)
- 사업완료 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준수, 세출예산집행 기준,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준용하여 집행 후 사업비 정산
- 정산 시 공급업체와 구입자의 장비 구입대금 영수증(세금계산서) 등과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함
-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 비율에 따라 환수 조치

○ 사후관리

- 장비는 5년 동안 항상 활용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함.
- 지원된 시설물 및 장비를 임의로 전용하거나 사전 승인 없이 양도, 임대, 폐쇄를 하였을 경우 시장은 지원된 보조금을 회수 조치

※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사후관리기간

재 산 명	사후관리기간		처분 제한 기준
	부터	까지	
- 건축물 및 부속 설비	준공일	10년간	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, 양도, 교환, 대여, 담보 제공 등 제한
- 주요 기계 및 장비	구입일	5년간	

○ 충청남도 보조금으로 지원 중인 시설 등은 표지판 설치(참고)

IV 행정사항

- 사업대상자 공모·접수·심사 : 2026. 1~2월중
- 보조금 교부계획 및 교부결정 : 2026. 3월중
- 사업추진상황 점검 : 사업기간 중 1회
- 사업비 집행실적(사업완료 후 즉시) 보고
- 사업성과 분석 및 정산보고 : 사업완료일부터 2개월 이내
- ※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「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, 「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」 등 준용